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7516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소6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E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지인인 F의 소개로 2018. 10. 4.경 E과 사이에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저온저장고'라고 한다)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0. 5. 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그중 95만 원은 '부과세완불'이, 65만 원은 '11월16일미불금'이 각 거래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20. 5. 4. E 앞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780만 원에 부가가치세 78만 원을 별도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 을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이체금은 'C'의 경리가 실수로 이체한 돈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온저장고 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은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총 813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체금 중 153만 원은 과다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이체금이 피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A/S비용으로 먼저 입금하라고 한 돈이라면, 피고는 이를 입금받고도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체금 16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일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약정금으로서 위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대금 7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체결되었고, 이 사건 이체금은 위 대금의 일부로 송금 받은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관련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3, 7, 8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토대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C’의 경리가 이 사건 이체금을 실수로 이체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 수리 선납금으로 이 사건 이체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이체금이 이체된 날짜인 2020. 5. 4.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날짜인 2020. 5. 4.이 일치하는바,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보인다(다만,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780만 원, 부가가치세 7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실제 금액인 750만 원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은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와 F의 2019. 1. 7. 및 2019. 1. 8.자 대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사건 계약이 대금 750만 원으로 체결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위 75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와 E 측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E이 가액 300만 원의 수표 2장과 현금 150만

원으로 지불방식을 약속했다는 피고의 발언과, 우선 4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나중에 받으라는 F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적어도 750만 원 이상이라고 보여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66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6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F의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150만 원을 포함시킨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확인서(갑7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75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위 ③항 기재 F의 종전 발언과도 배치되는 점, E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F의 채무를 포함하여 E과 피고 사이의 계약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 사건 이체금이 'C'의 경리 실수라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서 과다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수리비용으로서 피고에게 우선 입금한 돈이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다양한 주장들 간의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고장으로 피고에게 A/S를 요청하였고 급한 마음에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입금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F 자신의 계좌와 원고의 계좌를 헷갈린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체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E의 지인에 지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F이 원고 소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좌를 헷갈려서 잘못 이체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⑦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해온 횟수와 금액,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E과 피고이며 원고는 E의 딸인 점, 이 사건 이체금이 메모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특별한 계기 없이 실수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두 차례나 돈을 입금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어머니인 E 대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입금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약정금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지혜, 판사 이영범, 판사 이형석